

단품슬라이딩제도 운영기준 관련 Q & A

기획재정부는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원자재가의 급등으로 인해 중소 전문건설업계의 원자재 비용 부담이 증가하자 물가변동분 계약금액 인상 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단품ES 제도 운영기준과 관련, 궁금한 사항들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 단품슬라이딩 제도 시행시 적용 범위는?

A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각 부, 처, 청 등), 국회, 사법부,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단품슬라이딩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적용된다(구체적인 적용시기는 출자관리과에 문의).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품슬라이딩이 적용된다.

BTL 사업은 단품슬라이딩이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회계계약제도과)에 문의

Q 특정규격 자재의 범위는?

A 특정규격자재란?

-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이 있는 모든 자재를 말한다.
-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의 기초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를 계약체결시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단가로 한다.

예를 들면)

‘이형철근’의 경우 D 10, D 13, D 16 등 규격이 있는 자재별로 각각 단품슬라이딩을 할 수 있다(이형철근을 모두 묶어 단품슬라이딩을 하는 것은 아님).

Q 단품슬라이딩 제도의 취지는?

A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으나, 아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하 “총액ES*”)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특정자재를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자들(계약상대자가 당해 자재를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이 기존 계약금액으로 계약이행을 하기가 곤란하여 총액ES 전에 특정자재에 대해서만 가격상승분을 보정해주는 제도이다.

* ES : Escalation

Q 단품슬라이딩도 90일 조건이 충족되는 날이 조정기준일이 되는 것인지 여부

A 단품슬라이딩도 총액ES와 마찬가지로 ① 계약일 이후 90일 경과하고 ② 특정규격자재 가격이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 대비 15%이상 변동하는 두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날이 조정기준일이 된다.

따라서, 조정기준일은 임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다.

시행령 제64조제1항에서 총액ES는 계약일 후 90일 경과(기간요건), 입찰일 기준 3%이상 변동시(조정률요건)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64조제6항에서 “제1항 각호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 각호”는 조정률요건을 의미하므로, 기간요건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Q 단품슬라이딩 후 총액슬라이딩시 90일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

A 단품슬라이딩 후 총액슬라이딩까지에 대해서는 90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조정이 가능하다.

Q 감액 단품슬라이딩이 된 경우의 처리방법은?

A 단품슬라이딩으로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게 되면, 총액ES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에 단품가격상승률이나 단품지수를 합산하여 3%이상 되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Q 단품슬라이딩의 적용대상은?

A 2006.12.29 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도입되었으므로, 동 시행령이 시행되는 2006.12.29이후 새로운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국가계약법시행령(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 부칙 제4항에서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 입찰, 계약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Q 2006.12.29 이후 새로운 입찰공고를 한 계약이나 세부 운영기준 시행(08.5.1) 전에 총액ES를 받은 경우 단품슬라이딩 적용이 가능한지?

A 총액ES로 받은 조정금액 내에 단품슬라이딩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ES를 받았다면, 총액ES

전에 단품가격상승분에 대해서는 단품슬라이딩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총액ES 이후 총액ES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단품 슬라이딩 요건이 충족된다면, 단품슬라이딩은 적용이 가능하다.

Q 2006.12.29 이후 새로운 입찰공고를 한 계약이나 세부 운영기준 시행 전에 계약이 종결된 경우 단품슬라이딩 적용이 가능한지?

A 운영기준 시행 전에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계약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약관계 유지를 위하여 단품슬라이딩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

다만, 계약종결 전 계약상대자의 단품ES 신청이 있거나 또는 준공대가를 개산급 처리한 경우에는 단품ES 적용이 가능하다.

Q 단품슬라이딩의 방법은?

A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 중 품목조정률 조정방법에 해당하는 조항의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방법, 선금공제, 계약상대자의 청구 후 30일 이내 계약금액조정 등도 모두 준용된다.

Q 총액ES와 단품슬라이딩이 동시에 충족될 때 처리방법은?

A 계약상대자가 총액ES를 신청하고, 하도급자가 단품슬라이딩을 요청한 경우에 문제가 된다.

이 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총액ES를 처

리해야 한다.

단품슬라이딩은 총액ES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며, 하도급계약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액ES를 우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Q 지수조정률에서 단품슬라이딩 후 총액ES시 지수에서 단품가격상승률을 공제하는 방법은?

A 지수조정률을 이용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K = (a \frac{A_1}{A_0} + b \frac{B_1}{B_0} + c \frac{C_1}{C_0} + d \frac{D_1}{D_0} + e \frac{E_1}{E_0} + f \frac{F_1}{F_0} + g \frac{G_1}{G_0} + h \frac{H_1}{H_0} + i \frac{I_1}{I_0} + j \frac{J_1}{J_0} + k \frac{K_1}{K_0} + l \frac{L_1}{L_0} + m \frac{M_1}{M_0} + \dots + z \frac{Z_1}{Z_0}) - 1$$

단, $z = 1 - (a+b+c+d+e+f+g+h+i+j+k+l+m \dots)$

- d(공산품)중에서 ‘단품’ 이 15%이상 가격이 상승하여 단품슬라이딩이 발생하였다면, d를 단품(d1)과 단품을 제외한 공산품(d2)으로 조정계수를 분류함.

$$d = d1 + d2$$

- 단품(d1)에 대해서는 특정자재 가격상승률을 이미 지급하였기 때문에 공제(-특정자재 가격상승률/100)를 하고, 특정자재의 조정기준일(D_{1/2})부터 물가변동조정기준일까지의 지수증가분(D1)을 합산

$$d \frac{D_1}{D_0} \xrightarrow{\text{변경}} d1(\frac{D_1}{D_{1/2}} - \frac{15}{100}) + d2 \frac{D_1}{D_0}$$

- 단품을 제외한 공산품(d2)에 대해서는 증감률을 기준과 같이 (D1/D0)로 산정

- 단품에 대해서는 단품슬라이딩으로 계약금액조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조정금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지수에서 공제함.
(중복부분을 공제하는 것임.)

※ 시행규칙제74조제1항제1호의 품목조정률 산출식을 다음과 같이 적용함.

$$\frac{\text{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text{특정규격자재의 잔여 수량에 단품ES 가격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geq 3\%$$

계약금액

Q 품목조정률에서 단품슬라이딩 후 총액ES 시 품목조정률을 산출하는 방법과 총액물가조정은 언제 가능한지?

A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0조의3 제2항제1호에서 “품목조정률 산출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특정규격자재의 가격상승률을 감산한다.”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을 말하며, 단품슬라이딩에 따른 당해 자재 가격상승률을 감산한 상승률이 3%이상인 경우 총액물가조정을 하는 것이다.

Q 단품ES 후 총액ES 전에 단품을 전부 사용하여 총액ES 이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단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총액ES시 조정률을 감하는지 여부?

A 총액ES의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단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단품ES로 인한 중복부분도 없는 것이므로, 총액ES시 조정률을 감하지 않는다.⓪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

다이내마이트의 발명 이래 다양한 터널굴착기술의 발전은 인류 교통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조선 시대 과거를 보러가던 영남의 선비들이 문경새재를 넘고, 영동 지방의 보부상들이 대관령을 넘어야 했습니다. 이에 비해, 현대의 여행객들은 터널을 통과해 빠른 속도로 산 이쪽에서 반대편으로 도달합니다.

산악 지역을 통과하는 터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철 5호선은 한강 하저를 통과합니다. 한참 공사 중인 분당선 왕십리~선릉 구간에서도 지난 2007년 11월 8일 한강 하저를 통과하는 터널 관통에 성공했습니다.

더 나아가 바다 밑을 통과하는 터널도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도버 해협을 통과하는 유로터널(50.5km)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해저 터널은 이웃나라 일본에도 있습니다. 혼슈 섬과 홋카이도 사이의 해저를 통과하는 세이칸(Seikan) 터널은 전체 연장이 53.85km(해저부분 23.3km)로 현존하는

세계 최장의 터널입니다. 신칸센으로 시속 200km정도로 통과한다고 해도 15분 이상이 걸리는 길이입니다.

그러나 곧 세이칸 터널은 2010년이면 스위스와 이탈리아 사이의 알프스 산맥을 관통하는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Gotthard Base Tunnel)에게 세계 최장 터널의 명예를 넘겨주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10km가 넘어가는 장대터널들은 주로 도로터널보다는 철도터널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터널의 경우 안전, 환기 등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철도터널에도 방재를 위한 시설들이 설치되는데, 예를 들어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에는 안전을 위해 2개의 중간 구난역(救難驛)과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재 시설이 함께 설치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최장터널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2006년 12월 7일 관통된 영동선의 솔안터널로 총 연장은 16.2km입니다.